## KB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<u>설명서</u>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<u>실제 계약</u>은 <u>KB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</u>약관이 적용됩니다. <u>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교부</u>됩니다.

## 1 상품 개요

■ 상 품 명 : KB 퇴직연금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<u>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형의</u>

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</u>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 등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
가입자격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
가입금액	제한 없음		
계약기간	고정금리형	1개월에서 60개월(5년)이내에서 연,월,일 단위로 계약	
	변동금리형	1년(회전기간 3개월, 6개월 2종류)	
세제혜택	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불가		

(세금공제전, 연%)

	(세리6세단, 근제			
	구 분	계약기간		이자율
		월구간	일구간	(연%)
	고정 금리형	1개월~ 3개월 미만	28일 이상 ~ 93일 미만	1.65
		3개월~ 6개월 미만	93일 이상 ~ 183일 미만	1.95
		6개월~ 9개월 미만	183일 이상 ~ 274일 미만	2.15
만기 이자율 (2012 10 16 기조)		9 개월 ~ 12 개월 미만	274일 이상 ~ 367일 미만	2.25
(2013. 10. 16 기준)		12 개월 ~ 18 개월 미만	367일 이상 ~ 555일 미만	2.30
		18 개월~24 개월 미만	555일 이상 ~ 735일 미만	2.35
		24 개월~30 개월 미만	735일 이상 ~ 915일 미만	2.50
		30 개월~36 개월 미만	915일 이상 ~ 1096일 미만	2.50
		36 개월~60 개월 미만	1096일 이상 ~ 1830일 이하	2.55
		60 개월		2.60
	변동	1년(3개월 회전)		1.95
	금리형	1년(67	2.15	

- 분할인출은 만기(중도)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가능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(근로자)별로 횟수를 산정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출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
  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
  - 2.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
- 고정금리형

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
□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			
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 상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피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 우	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-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 - 12개월 이상 :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	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-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 - 12개월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	
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			
□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			
□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			
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	-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(가산금리 포함)		
□ 교체애애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	

분할인출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 는 경우 적용 이자율)

(세금공제전,

2011.12.19기준)

		만  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하</u> 할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	
	■ 변동금리형		
분할인출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 는 경우 적용 이자율) (세금	사 유  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(1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(2)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 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 양을 하는 경우 (3) 5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(4) 5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피산선고를 받은 경우 (5)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	만기이자율 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신규일에 고시된 잔여에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만기이자율	만기 재예치 後  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

	□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□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□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□ 교체매매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(세금공제전, 연%) 예치기간 이자율 15일 미만 0.1 15일 이상~ 1개월 미만 0.3 1개월 미만 0.5 3개월 미만 0.5	
	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	- 회전 기간별 적용된 이자율(	가산금리 포함)
	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: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 교 고정금리형(2011.12.19 신	강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	
	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
중도해지이자율 (세금공제전,2011.12.19 기준)	□ 계약해지 □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</u> 만기이자율 - 1년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
-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ㅇ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</u>			도해지 이자율 적용
(세금공제전,2011.12.19	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 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: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중 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  ■ 고정금리형(2011.12.19 산 사 유  □ 계약해지 □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  -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대	1개월 미만 0.3 1개월 이상~ 0.5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.0 - 회전 기간별 적용된 이자율( 결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. 참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을 나규분부터 적용) 최초 만기 前 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	지 이자율 적용 함에 적용된 이자율 적용)  만기 재예치 後  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  - 1년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

	■ 변동금리형					
	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		
	□ 계약해지 □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(세금공제전, 연%) 예치기간 이자율 15일 미만 0.1 15일 이상~ 1개월 미만 0.5 1개월 미만 0.5 3개월 미만 1.0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		
	-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ㅇ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	! 미만  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</u>	<u>도해지 이자율 적용</u>			
	(세금공제전,					
	경과기간		이자율			
만기후이자율	만기후1개월이내	만기이자율 X 50%				
(2011.12.19 기준)	만기후 1개월초과~3개월이 만기후 3개월초과	내 <u>만기이자율 X 30%</u> 0.5				
	- 만기이자율 : 신규가입일 또는	최종 재예치일의 일반정기예금 그	고시이자율 적용			
이자지급방식	1 기성글리영 1	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	
N N N u 8 4	I 번통금리영 I	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	
	-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아래의 재예치 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합니다					
	*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					
자동재예치	<u>이메일로 통지합니다.</u> 고정된 구분 일 단위	금리형 고정금리형 리 계좌 월(년) 단위 계좌	변동금리형 계좌			
	재예치기간 12기	최초 가입기간과 배월 동일 기간	최초 계약기간단위와 동일 기간			
계좌의 해지	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					
예금자보호 여부	이 퇴직연금정기예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예금보 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 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 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		

## 3 유의 사항

■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(☎1588-9999) 또는 KB 국민은행홈페이지(www.kbstar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